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,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**교육부령 제214호**
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7월 28일

교 육 부 장 관 인
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평소 행실, 근무성적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”를 “혐의 당시 직급,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, 평소 행실, 공적(功績),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”로, “의결하여야”를 “의결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직무태만”을 “직무태만(제12호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- 12. 소극행정(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- 13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- 14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별표 제1호다목 중 “직무태만”을 “부작위 또는 직무태만, 소극행정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차목 중 “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·고발 의무 불이행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”로 하며, 같은 표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성매매	과면	과면-해임	해임-강등	강등-정직
---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비고의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비고의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비고의 제6호의2 중 “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”을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”으로 한다.

- 1. 제1호다목에서 “부작위”란 교육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,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교육부 제공>

●국방부령 제1029호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7월 28일

국 방 부 장 관 인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군인 징계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3조제2항”을 “「군인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9조의4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징계심의대상자가 병(兵)인 경우: 별표 2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「정부표창규정」”을 “「정부 표창 규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징계 사유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의2,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참작하여”를 “참작하여”로 한다.

- 1의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- 10.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(이하 이 조에서 “소극행정”이라 한다)
- 10의2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은 제외한다)
- 14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- 15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